

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

관세법 제241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, 「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5. 9.

관 세 청 장

할당관세품목	상세품명 및 규격	세번부호(HSK)	적용기간
양배추	신선한 것	0704.90-1000	2024.5.10. ~ 2024.6.30.
포도	신선한 것	0806.10-0000	
당근	신선한 것	0706.10-1000	2024.5.10. ~ 2024.9.30.
김	식용의 건조한 것	1212.21-1010	
	식용의 조제한 것	2008.99-5010	
배추	신선한 것	0704.90-2000	2024.5.10. ~ 2024.10.31.
코코아두	생 것	1801.00-1000	2024.5.10. ~ 2024.12.31.

끝.